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11 선고 2020가합40496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운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길

변론 종결2023. 5. 16.

판결 선고2023.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압가스용기 755개(산소 250개, 질소 30개, 알곤 135개, 탄산 20kg 260개, 탄산 40kg 60개, 고순도 20개)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1) 및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6. 2. 25.자 양도양수계약을 37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6. 2. 25.자 양도양수계약을 37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8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가스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5. 4. 1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스 등을 공급받았던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 D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가스공급 거래를 해왔는데, 소외 회사가 기존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추가로 외상거래를 요구함에 따라 차용금 4억 원, 변제기 2014. 4. 3.로 하되 소외 회사가 보유한 가스용기 1,578개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E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14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2013. 4. 4. 작성한 후 2023. 12.경까지 소외 회사에 위 차용금 상당의 가스를 공급해 주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의 기존 물품대금이 882,481,850원인데 그 중 소외 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2,481,850원을 2013. 12. 10.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30.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3차3348)을 신청하여, 2013. 12. 31.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382,481,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4. 2. 8. 확정되었다.

라. 이후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1. 30. 소외 회사와, (1)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5톤 차량 및 시화, 화성 지역 거래처의 영업권(거래처의 소외 회사 소유 대여장비 및 미수금 63,341,633원과 액화석유가스용기 무상승계 포함)을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대금 중 3억 원과 미지급 물품대금을 상계처리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1차 매매계약 및 (2) 원고가 2014. 12. 31. 기준 소외 회사의 시화, 화성 지역 외 나머지 거래처 영업권, 대여장비 및 미수금을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대금과 2015. 7. 31.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을 상계처리하는 내용의 2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1차 매매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10. 12. 소외 회사에게, 2015. 10. 20.까지 외상매출채권 원금(2015. 10. 3. 기준) 444,975,788원 및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 미상환 이자 202,082,192원, 기타채권 등 합계 674,928,932원의 상환(단 그 중 3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상환에 갈음할 수 있다)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5. 10. 15.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 중 외상매출채권 원금은 인정하되 이자 등 나머지 금액은 인정할 수 없으며, 미수금 반환금은 2015. 10. 30.까지 정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채무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6. 2. 23. 소외 회사의 F은행, G은행, H은행, I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6타채4303)을 받아 2016. 2. 26. 위 결정문이 위 각 은행에 송달되었다.

사. 원고는 또한 2016. 3. 4.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양도담보물 인도를 청구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6. 3. 23.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2015. 8. 11.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자산과 채권 일체에 대한 양도, 양수를 마쳤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아. 원고는 다.항 기재 지급명령정본을 근거로 소외 회사 소유의 가스용기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신청하였으나, 2016. 5. 3. 유체동산압류집행이 불능되었고, 당일 작성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에는 '1. 현재 사업자는 JB(피고)임 2. B의 진술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5. 12.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영업하다가 현재는 영업을 중단하고 주소만 되어 있다고 함

3. 소외 회사라고 표기된 가스통도 모두 J 것이며 소외 회사의 것이 아니라 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자. 한편, 소외 회사는 2016. 2. 25.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거래처 영업권을 포함한
소유자산(임대용기포함), 일반고압가스 제조허가증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거래처 영업권, 가스용기 등 자산을 모두
이전하였다[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5억 2,800만 원도 함께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을 제1호증(인증서)을 제시하므로 보건대, 위 인증서에 첨부된
2016. 2. 25.자 양도양수계약서상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양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증서의 작성일시는 그로부터 10개월 이후인 2016. 12. 26.이고,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가 2016. 12. 27. 피고에게 승계된 점, 위
양도양수계약서와 달리 대출금 채무 승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2016. 2. 25.자
양도양수계약서(갑 제23호증)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을 제1호증에 첨부된
양도양수계약서는 시기를 소급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내용에 위 대출금
채무 양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차. 원고는 2016. 6.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D는 2017. 3. 30.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214호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카. 이후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게 '피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 간 이 사건 공정증서의 동산목록
담보물건(고압가스용기)의 소유자인바, 위 쌍방이 채권, 채무를 정확히 정산하고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다면 피고 소유의 고압가스용기(산소 250개, 질소 30개, 알곤
135개, 탄산 20kg 260개 및 40kg 60개, 고순도 20개 등 도합 755개,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로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담보공증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K 등부 2017년 제2528호로 인증을 받았다.

타. 한편, D는 위 차.항 기재 법원으로부터 2018. 2. 7. '이 사건 공정증서 관련 외상거래와 관하여
원고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가스용기 1,578개 중 385개만이 소외 회사의 소유였고 나머지 1,193개는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어서 위 가스용기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써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401,058,900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파. D는 2018. 7.경 원고와 '① D는 원고가 미변제받은 대금이 원금 기준으로 4억 4,000만 원 상당임을 인정한다, ② D는 이 사건 확인서 관련 피고가 원고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동산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조치 및 적극 협조한다. ③ 원고의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 거래처, 용기 등을 피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J로 이전하였고, 이는 원고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한 계획에 따른 것이었음을 인정하며, 피고가 불응하여 원상복구가 지연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 거래처 등 소외 회사의 모든 거래처를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원고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 D가 위 형사 합의서를 항소심에 제출하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8노652)은 2018. 7.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거. 원고는 2019.경 피고를 강제집행면탈 및 위증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2019. 11. 18. 피고에 대하여 'D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실제로 소외 회사의 소유자산 전부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위 양도양수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5억 2,000만 원도 함께 인수하였고, 현재까지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양도양수계약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D가 위 양도양수계약이 실제 유효한 계약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도 2020. 2.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3, 16 내지 24,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는데,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2016. 2. 25. 피고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하여 그 자산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 위 양도자산의 가액은 최소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으로서 소외 회사의

자산 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3억 7,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3억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3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동산인도청구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소외 회사와 원고가 채권, 채무를 정확히 정산하고도 소외 회사의 남은 채무가 있다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권 실행²⁾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가사 위 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81,400,000원³⁾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소외 회사는 원고와 가스공급 거래를 해오던 중 자금부족으로 외상거래를 요청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약 4억 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해 주었으나 소외 회사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는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보유 자산을 이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던 중 원고가 소외 회사의 예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가자 그 무렵 피고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보유 자산 대부분을 양도한 사실, D는 형사 합의서에서 원고의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거래처, 용기 등 자산을 피고에게 이전 조치하였고, 이는 원고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한 계획에 따른 것임을 인정한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 법원의 2021. 5. 7.자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차량, 가스용기 등 영업 자산을 보유한 것 외에 부동산 등 특별한 자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5억 2,850만 원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양도자산 가액이 3억 7,000만 원 이상이라 주장하면서 3억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가액반환으로 피고에게 3억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2021. 6. 4. 자 서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양도자산 가액이 3억 7,000만 원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양도자산 가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여부와 별론으로, 위 금액 한도 내에서 위 양수도계약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목적물인 소외 회사의 거래처 영업권 등 자산에 대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달리 가액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양도자산 가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으로서 소외 회사의 자산 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3억 7,000만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 위 매매계약은 원고와 소외 회사 간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소외 회사가 보유한 거래처 영업권 등 자산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그 가치를 평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그 자산 평가액은 위 당사자들이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 객관적인 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증인 D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실사를 하지는 않았고,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거래처 목록 가운데 거래가 중단되거나 폐업된 업체도 있다고 진술한 점(2022. 3. 22. 자 녹취서요지 제13 내지 16쪽), ㉢ 나아가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시는 2015. 1. 30.이고, 당시 소외 회사의 2014. 12. 31. 기준 거래처 목록과 2014년 매출액이 1,599,332,072원임을 토대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시점(2016. 2. 25.)과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그 사이 거래가 중단된 거래처가 상당수 있고 2015년 매출액은 578,916,579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양도자산 가액이 위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동산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채권, 채무를 정확히 정산하고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다면 이 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확인서상 담보제공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양도담보 물건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양도담보부 공정증서의 내용에 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물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2018.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이 4억 4,000만 원 상당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형사 합의서(갑 제19호증)를 작성한 점, ② D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편취액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44,975,7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차1211)이 2018. 7. 20. 이루어져 위 지급명령이 2018. 8. 10. 확정된 점, ③ 소외 회사는 2017. 8. 2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2164호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9. 22. 위 소를 취하한 점, ④ 증인 D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취하하고, 원고의 D에 대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미지급 물품대금 정산금을 확정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2021. 10. 12.자 녹취서요지 제1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물품대금의 정산이 완료되었고, 그 변제기도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 내지 현재 가치 상당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으므로(2020. 8. 27.자 피고 준비서면 제8쪽), 피고가 위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의 실행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용신

판사이희경

판사한승진

- 1) 청구취지 기재상 '알곤 135개'가 누락되었으나 이는 단순 오타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청구한 것으로 설행하여 판단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설행하여 판단한다.
- 3) 갑 제3호증의 1(자산평가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다.